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57

발의연월일: 2020. 7. 24.

발 의 자: 박성중・홍준표・하영제

윤창현 · 김석기 · 신원식

조수진 • 유경준 • 김용판

이명수 · 박덕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스프링클러 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는 화재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해 화재의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라 는 평을 받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령은 6층 이상인 아파트,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제곱미터 이상인 요양병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에 한정하여 스 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, 골목길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 아 소방대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5층 이하 시설 등 비 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.

한편,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요 가연물인 차량으로 인해 화재 확산 속도가 빨라 건물 이용자의 피해도 커질 수 있으므로 유류화재 등에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 분무 소화설비 등

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시설의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 없이,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등 유류 화재의 위험성이 큰 시설에는 자동식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을, 그 외의 아파트, 의료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·제4항).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 항)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및 제2항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본문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-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방시설은 해당 특정소방대상 물의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 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·관리되어야 한다.
- 1. 유류·전기 화재 등에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 분무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화설비(이하 "자동식 물분무등소화설비"라 한다): 항공기 격납고,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
- 2. 스프링클러 설비: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 방대상물
-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중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

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 시설(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말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9조의4제1항 중 "제9조제1항"을 "제9조제1항 전단"으로 한다.

제10조의2제2항 중 "제9조제1항 전단"을 "제9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제9조제1항 전단"을 "제9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다음"을 "자동식 물분무등소화설비 및 스프링클러 설비와 다음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9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"을 "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식 물분무등소화설비, 스프링클러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제9조제1항 전단"을 "제9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"제9조제2항"을 "제9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47조의3제1항제1호 중 "제9조제1항"을 "제9조제1항 및 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9조제3항"을 "제9조제4항"으로 한다.

제48조제1항 중 "제9조제3항"을 "제9조제4항"으로 한다.

제48조의2제1호 중 "제9조제2항"을 "제9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53조제1항제1호 중 "제9조제1항 전단"을 "제9조제1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식 물분무등소화설비 및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동식 물분무등소화설비 및 스프링클러 설비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제9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 제9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 는 소방시설의 유지·관리 등) 는 소방시설의 유지·관리 등)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 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(경 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말한다)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 한다. 치 또는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 <신 설>

아 0]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소방시설은 해당 특정소방 대상물의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 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따 라 설치 또는 유지·관리되어야

1. 유류·전기 화재 등에 자동으 로 대응할 수 있는 물 분무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소화설비(이하 "자동식 물분무등소화설비"라 한다): 항공기 격납고, 건축물 내부 에 설치된 주차장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 <신 설>

<신 설>

-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·관리되어 있지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·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(잠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

물

- 2. 스프링클러 설비: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
-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중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 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 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(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말한다)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 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<u>(3)</u>					 	
제1	항	및	제2형	<u>당에</u> -	 	
						
			 제2			
	<u>~</u>	<u>_ ᄎ</u> 	<u> </u>	<u>~</u>	 	

아니 된다. 다만, 소방시설의 점검·정비를 위한 폐쇄·차단은 할 수 있다.

제9조의4(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 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 비 등)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 모·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 려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- 제10조의2(특정소방대상물의 공 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 시설의 유지·관리 등) ① (생 략)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·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·관리한 것으로 본다.
 - ③·④ (생 략)

제9조의4(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
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
비 등) ① 제9조제1항 전단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0조의2(특정소방대상물의 공
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
시설의 유지·관리 등) ① (현행
과 같음) ②
제9조제1항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소방시설	기준 적용의 특
례) ① 소방본	-부장이나 소방서
장은 제9조제	1항 전단에 따른
대통령령 또는	화재안전기준이
변경되어 그	기준이 강화되는
경우 기존의	특정소방대상물
(건축물의 신축	축·개축·재축·이전
및 대수선 중	인 특정소방대상
물을 포함한다))의 소방시설에
대하여는 변경	경 전의 대통령령
또는 화재안전	기준을 적용한다.
다만, <u>다음</u> 각	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	소방시설의 경우
에는 대통령령	경 또는 화재안전
기준의 변경으	로 강화된 기준
을 적용한다.	

- 1. ~ 3. (생략)
- ②・③ (생 략)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~ 4. (생 략)

세11조(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
례) ①
<u>제9조제1항</u>
자동식 물분무등소화설
비 및 스프링클러 설비와 다음
<u>.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4
<u>제</u> 9조제1항에도
불구하고 자동식 물분무등소화
설비, 스프링클러 설비 등 대통
<u> 령령으로 정하는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있다.

제47조의2(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)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·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(이하 "조치명령 등"이라 한다)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수있다.

- 1. (생략)
- 2.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

⑤
<u>শ</u> 9
<u> 조제1항</u>
제47조의2(조치명령 등의 기간연
장) ①
1. (현행과 같음)
2. 제9조제3항

에 대한 조치명령

- 3. ~ 8. (생략)
- ② (생략)
- 제47조의3(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 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.
 - 1. <u>제9조제1항</u>을 위반하여 소방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·관리 한 자
 - 2. <u>제9조제3항</u>을 위반하여 폐 쇄·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3. (생 략)
 - ② ③ (생 략)
- 제48조(벌칙) ①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·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② (생 략)
- 제48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5조제1항·제2항, <u>제9조제2</u>항, 제10조제2항, 제10조의2제

3. ~ 8. (현행과 같음)② (현행과 같음)
제47조의3(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
 1. <u>제9조제1항 및 제2항</u>
2. <u>제9조제4항</u>
3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48조(벌칙) ① <u>제9조제4항</u>
· ② (현행과 같음) 제48조의2(벌칙)
~ 40エ - 2(巨气)

3항, 제12조제2항, 제20조제12 항, 제20조제13항, 제36조제7 항 또는 제40조의3제2항에 따 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

2. ~ 7. (생략)

- 제5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<u>제9조제1항 전단</u>의 화재안전 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한 자
 - 2. (생략)
 - ②·③ (생 략)

2. ~ 7. (현행과 같음)
제53조(과태료) ①
<u>.</u>
1. 제9조제1항
2. (현행과 같음)
4. (1) 8 寸 在百月
②・③ (현행과 같음)